

##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방침

피앤에스네트웍스는 “존경 받는 기업의 건설”이라는 비전의 달성과 회사 정관 상의 목적사업 경영을 위한 모든 임직원의 제반 업무의 수행시, 관련 제반 법규의 준수와 청렴하고 윤리적인 직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방침을 제정하고 실천할 것임을 선언한다.

제1조 (부패행위 금지)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내외 이해관계자를 상대로 금품 등 뇌물의 제안, 약속 또는 요청, 수락 등 일체의 부패행위를 하지 않으며, 회사는 부패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제2조 (법규준수)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부패행위를 포함한 업무와 관련한 모든 국내외 법령 및 사내 규정을 준수하고, 이에 위반되거나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는다.

제3조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회사는 부패행위를 포함한 모든 리스크를 방지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글로벌 기준에 맞는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발전시키며 이행한다.

제4조 (이해관계자에 적용) 회사는 에이전트, 컨설턴트, 파트너사 등 제3자에 의한 부패행위를 포함한 규범 미준수 행위를 용인하지 않으며, 제3자에 의한 부패행위를 포함한 규범 미준수 행위 방지를 위해 정기적 조사·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권한과 독립성) 회사는 투명하고 효과적인 부패행위를 포함한 규범준수를 위하여 규범 준수책임자를 두고 부패행위를 포함한 규범준수에 필요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며 독립적 지위를 보장한다. 규범준수책임자는 지배기구에 그 성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제보시스템)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부패행위를 포함한 법령 또는 내부 규정의 위반을 알게 되는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 제보하여야 하고, 회사는 선의의 제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시행하여 제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보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7조 (미준수에 대한 책임)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국내외 부패행위를 포함한 법령 및 내부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발견하고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됨을 인식하고 회사는 처리결과를 공개한다. 또한, 법령 위반으로 인한 벌금 또는 과태료, 기타 손해를 회사로부터 전보 받을 수 없으며, 회사의 경제적, 비경제적 방면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경우 회사에 대하여 민형사상 기타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제8조 (실행의지) 회사는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 부 칙

제1조 (소급효) 본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규정 시행일 전의 사항에도 적용한다.

제2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본 방침 시행 당시 내지 시행 이후 운영되는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와 관련한 규정에 대하여 본 방침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